

03 방역 수칙 의무화 영역 확대

첫 번째. 방역수칙 의무화 영역 확대

다중이용시설 중점·일반관리시설 23종으로 확대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작성·관리, 주기적 소독·환기 수칙 등 공통적으로 의무화

활동 마스크 착용 의무화

대중교통 이용, 집회·시위, 실내 스포츠 경기 관람, 요양시설 등

특별방역기간 명절, 연말연시 일시적 방역 강화

일시적 위험성 증대 우려가 있는 시설·활동에 대해 방역 수칙 및 점검·처벌 강화 등



두 번째. 방역 수칙 재정비 및 통합제공체계 마련

시설별 수칙 등 재점검

각종 방역 지침의 현실성·효과성 및 지침 간 정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활동별 수칙강화

흡연실 이용, 게스트하우스 파티, MT·수련회, 단체 식사, 동호회 등

방역수칙 홍보·교육

방역관리자 역량 강화, 자율적 방역관리 지원

세 번째. 방역 조치 책임성 제고

과태료 방역수칙 위반 시설의 운영자 이용자에 대해

→ 과태료 부과

구상권 방역수칙 위반으로 인한 감염 확산 시

→ 구상권 청구 활성화

인센티브 자발적으로 방역을 강화하는 시설에 대해

→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방안 마련

04 거버넌스 강화

첫 번째. 단계 조정 예고

단계별 격상 가능성을 사전에 알려 현장 준비시간을 확보합니다

두 번째. 의견수렴 다각화

생활방역위원회 정례화, 각 부처 소관 시설·업계 의견 적극 수렴을 통해 사회적 합의 체계를 강화합니다

세 번째. 중앙정부·지자체 협의 강화

시·도 지역 상황에 따라 자체적 단계조정도 가능하지만, 중앙정부와 필수적으로 협의하는 절차를 마련합니다



“

11월 7일부터 변경된 거리두기 1단계에 맞춰 현재의 방역 조치가 조정됩니다

”

유행 확산 시 원칙적으로 본 거리두기 개편방안을 따르되, 방역 상황 및 유행 특성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단계 및 방역 조치를 조정·운영합니다

“

코로나 공존(with Covid-19) 시대 지속 가능한 거리두기 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



01 거리두기 단계 세분화

첫 번째. 세분화

기존 3단계를 보다 세분화 하되, 지역적 접근을 강화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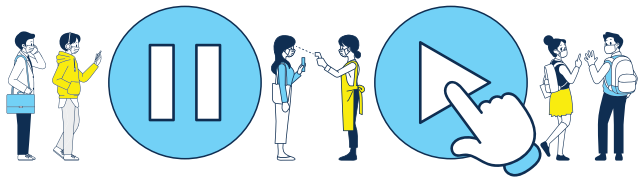
1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
생활방역	지역 유행 단계		전국 유행 단계	
생활 속 거리두기	지역적 유행 개시	지역 유행 급속 전파, 전국적 확산 개시	전국적 유행 본격화	전국적 대유행

두 번째. 격상기준

권역별 중증환자 병상여력 및 유행의 주간 증감양상에 따라 이전에 비해 상향된 격상 기준을 설정합니다

(주평균)

1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
생활방역	지역 유행 단계		전국 유행 단계	
[수도권] 100명 미만 [타권역] 30명 미만 강원·제주는 10명 미만	[수도권] 100명 이상 [타권역] 30명 이상 강원·제주는 10명 이상	※ 세 가지 상황 중 1개 충족 시 격상 ① 1.5단계 기준 2배 이상 증가 ② 2개 이상 권역 1.5단계 유행 지속 ③ 전국 300명 초과	전국 400명 ~ 500명 이상 또는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	전국 800명 ~ 1,000명 이상 또는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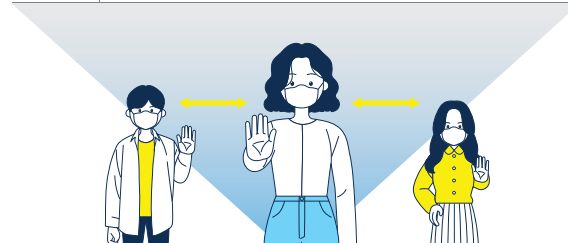


02 정밀해진 거리두기 체계

첫 번째. 다중이용시설

시설위험도 평가 체계를 고·중·저위험에서 중점·일반관리시설의 2층 구조로 재정비 합니다

구분	대상 시설
중점 관리시설 (9종)	유흥시설 5종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식당·카페
일반 관리시설 (14종)	PC방, 결혼식장, 장례식장, 학원, 직업훈련기관, 공연장, 영화관, 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멀티방,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이·미용업 상점·마트·백화점 독서실·스터디카페
기타시설	중점·일반관리시설 23종 외 실내 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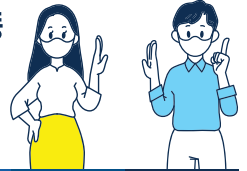


구분	1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
	생활방역	지역 유행 단계		전국 유행 단계	
중앙 시설	유흥 시설	4㎡당 1명 인원제한	춤추기, 좌석 간 이동 금지 추가	집합금지	
	식당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150㎡이상)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확대 (50㎡이상)	21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추가	8㎡당 1명 제한 추가
일반 시설	영화관	마스크착용 등 기본 방역수칙 의무화	다른 일행 간 좌석 띄우기	음식섭취 금지 좌석 한칸 띄우기	21시 이후 운영 중단 추가
	공연장	집합금지			

* 유흥시설 및 식당도 1단계에서 마스크 착용 등 기본 방역수칙은 의무화

두 번째.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모임, 직장근무, 등교 등 일상적 활동에 대해 차등적·단계적 방역강화를 실시합니다



구분	1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
	생활방역	지역 유행 단계		전국 유행 단계	
마스크 착용 의무화	중점·일반 관리시설, 대중교통,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집회·시위장, 실내스포츠경기장, 고위험 사업장, 지자체에 신고·협의된 500인 이상 모임·행사	1단계에 실외 스포츠 경기장 등 추가	실내 전체 + 실외 위험도 높은 활동	실내 전체, 2m 거리유지가 어려운 실외	
모임·행사	500명 이상 지자체 협의 필요, 방역수칙 의무화	축제 등 일부 행사 100인 이상 금지	100인 이상 금지	50인 이상 금지	10인 이상 금지
직장 근무	재택근무 등 활성화 권고			1/3 이상 재택근무 권고	필수인원 외 재택근무 의무화
등교	밀집도 2/3 원칙, 조정 가능	밀집도 2/3 준수	밀집도 1/3 원칙, 조정 가능	밀집도 1/3 준수	전면 원격수업

세 번째. 국공립시설

체육시설, 기타 문화·여가시설 등으로 분류하여 단계 격상 시 운영을 중단하거나 제한합니다